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6
----------	-----

제출년월일 : 9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가스사업자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 개정으로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부과기준”을 법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세부적인 처분내용을 개정 하고
- 기타 법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우리시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시행하므로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청문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되었고
(개정전 : 1회30, 2회60, 3회100만원, 개정후 : 1회100, 2회200, 3회300만원)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하도록 가스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개정전 : 1회10, 2회30, 3회50만원, 개정후 : 1회50, 2회100, 3회200만원)

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시공자 등록 제도가 전문건설업등록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과태료 처분규정을 폐지하고

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공사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신설되었음.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54조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청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처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벌표)를 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테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1. 안전관리규정				
가. 사업개시 또는 사용신고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때	고법 제11조제1항 액법 제10조제1항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11조제4항 액법 제10조제4항	100 100	200 200	300 300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제5항 액법 제10조제5항	50 50	100 100	200 200
라. 제조공정 및 자체검사 방법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제3항 액법 제10조제3항	100 100	200 200	300 300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5조제3항 액법 제14조제3항	100 100	200 200	300 300
3. 보험가입		60일미만	60일이상 180일미만	180일이상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5조제1항 액법 제33조제1항	100 100	200 200	300 300
4. 자체검사				
가스시설 및 용품,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 하고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2조제1,2항 액법 제11조제1,2항	50 50	100 100	200 200
5. 시공의 자체검사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체검사를 미실시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액법 제16조제1항 도법 제13조	50 100	100 200	200 300
6. 공급자의 의무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0조제3항 액법 제9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나. 가스 수요자에게 부적합시설의 개선을 명한 경우 부적합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제4항 액법 제9조제4항	30 30	60 60	100 100
7. 시설, 용기의 안전유지				
가. 가스용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제4항 액법 제12조제4항	50 100	100 200	200 300
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3조제3항 액법 제12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3항 액법 제29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는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4항 액법 제29조제4항	50 50	100 100	200 200
9. 허가관청 등의 조치	고법 제24조	50	100	200
위해방지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액법 제32조	50	100	200
10. 보고, 검사 등	고법 제26조제1항	50	100	200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	액법 제35조제1항	50	100	200
11. 가스공급의무				
가스공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한 때	액법 제25조	100	200	3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12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임시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된 시설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때	액법 제19조제2항 도법 제16조제2항	50 100	100 200	200 300
13 판매의 제한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방법에 어긋날 때 나.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지역 또는 건물안에서 용기에 의한 가스를 공급한 때	액법 제24조제3항 액법 제24조제4항	50 50	100 100	200 200
14 시공기록 등의 보존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법 제17조	50	100	200
15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한때 영업소, 사무소의 보기 쉬운곳에 공급규정을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법 제28조 도법 제22조	50 100	100 200	200 300
16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 하지 않았을 때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법 제28조제2항 도법 제28조제3항	100 100	200 200	300 300
17 표준공사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고시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액법 제15조의3제2항	100	200	3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18. 자체안전교육				
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제23조의2제1,3항 액법제31조의2제1,3항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자체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23조의2제2항 액법 제31조의2제2항	100 100	200 200	300 300
19. 사고의 통보				
사업자 또는 사용신고자가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받은 공사가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고법 제26조의2제1항 액법 제35조의2제1항	50 50	100 100	200 200
20. 신고한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고법 제4조제2항	100	200	300
21. 안전성평가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명한 경우 이를 위반한 때	고법 제13조의2제2항 도법 제27조의2제2항	100 150	200 300	300 500
22. 검사 등				
고압가스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실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고법 제16조 제3항 도법 제42조제1항	100 150	200 300	300 500
2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고법 제28조의2	100	200	300
24. 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때	도법 제11조제2항	150	300	5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제2조(부과대상자) 1.~2.(생략)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	제2조(부과대상자) 1.~2.(생략)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을 받는자
제4조(청문) 시장이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 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 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제4(청문) 삭제
제6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 보) ①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 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 보) ①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 -----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 안전관리규정							
가. 사업개시 또는 사용신 고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등록)관청에 제 출하지 않을 때	고법 제11조제1항 액법 제10조제1항	30 -	60 -	100 -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11조제4항 액법 제10조제4항	30 -	60 -	100 -	100 100	200 200	300 300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 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을 준수치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 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제5항 액법 제10조제5항	10 -	30 -	50 -	50 50	100 100	200 200
라. 제조공정 및 자체검사 방법등을 안전관리규 정에 포함시키지 않았 을 때	고법 제11조제3항 액법 제10조제3항	30 -	60 -	100 -	100 100	200 200	300 300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 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직무 를 대행하지 못할 때	고법 제15조제3항 액법 제14조제3항 도법 제29조제3항	30 - -	60 - -	100 - -	100 100 폐 지 도(道)업무사항 임.	200 200	300 300
3. 보험가입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 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5조제1항 액법 제33조제1항	60일 미만 30 -	60일이 상180 일미만 60 -	180일 이상 100 -	60일 미만 100 100	60일이 상180 일미만 200 200	180일 이상 300 3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4. 자체검사 가스시설 및 용품,용기등 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 시하지 않거나 그 기록 을 작성,보존하지 아니 하고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2조제1,2항 액법 제11조제1,2항	10 "	30 "	50 "	50 50	100 100	200 200
5. 시공의 자체검사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산 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 성보존하지 않거나 허 위로 작성할 때	액법 제16조제1항 도법 제13조	10 "	30 "	50 "	50 50	100 100	200 200
6. 공급자의 의무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 지 않았을 때 나. 가스수요자에게 부적 합시설의 개선을 명한 경우 부적합시설을 개선 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제3항 액법 제9조제3항 고법 제10조제4항 액법 제9조제3항	10 " 신설	30 " 신설	50 " 신설	50 50 30 30	100 100 60 60	200 200 100 100
7. 시설, 용기의 안전유지 가. 가스용기를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관 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제4항 액법 제12조제4항	10 30	30 60	50 100	50 50	100 100	200 2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u>산업자</u> 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3조제3항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액법 제12조제3항	—	—	—	<u>50</u>	<u>100</u>	<u>200</u>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u>산업자</u> 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3항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액법 제29조제3항	—	—	—	<u>50</u>	<u>100</u>	<u>200</u>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는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4항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액법 제29조제4항	—	—	—	<u>50</u>	<u>100</u>	<u>200</u>
9. 허가관청 등의 조치 위해방지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고법 제24조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액법 제32조	—	—	—	<u>50</u>	<u>100</u>	<u>200</u>
10. 보고, 검사 등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	고법 제26조제1항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액법 제35조제1항	—	—	—	<u>50</u>	<u>100</u>	<u>200</u>
	<u>도법 제41조제1항</u>	—	—	—	폐 지 도(道) 업무사항 임.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위 반 내 용	분 관 련 법 규	현 행			개 정 안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1.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액법 제15조의2 도법 제12조의2	50만원(고의가아닌 경우) 100만원(고의인경우)			폐 지 96. 12. 30일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전문건설업의 등록)로개정 됨.		
나.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시공사)로하여금 공사를 시공관리하지 않았을 때	액법 제15조제1항 도법 제12조제1항	10 “	30 “	50 “	폐 지 액법 제45조및도법 제51조(벌칙) 규정에 해당됨.		
12. 가스공급의무 가스공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한 때	액법 제25조	30	50	100	100	200	300
13.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임시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된 시설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때	액법 제19조제2항 도법 제16조제2항	10 “	30 “	50 “	50 100	100 200	200 300
14. 판매의 제한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방법에 어긋날 때	액법 제24조제3항	10	30	50	50	100	2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나.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지역 또는 건 물안에서 용기에 의한 가스를 공급할 때	액법 제24조제4항	<u>10</u>	<u>30</u>	<u>50</u>	<u>50</u>	<u>100</u>	<u>200</u>
15. 시공기록 등의 보존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u>산업자 원부령</u>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 야 하나 이를 위반하 였을 경우	액법 제17조 도법 제14조	<u>10</u> “	<u>30</u> “	<u>50</u> “	<u>50</u> “ 폐지 <u>도(道)업무사항</u> 임.	<u>100</u>	<u>200</u>
16.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사업자, 도시가스사업 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을 얻거나 변경한 때 영업소, 사무소의 보기 쉬운곳에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법 제28조 도법 제22조	<u>10</u> “	<u>30</u> “	<u>50</u> “	<u>50</u> <u>100</u>	<u>100</u> <u>200</u>	<u>200</u> <u>300</u>
17.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에 방조치 등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 하고 그 사실을 신고 하지 않았을 때	도법 제28조제2항	<u>10</u>	<u>30</u>	<u>50</u>	<u>100</u>	<u>200</u>	<u>300</u>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법 제28조제3항	3	6	10	100	200	300
18. 표준공사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고시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액법제15조의3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00	200	300
19. 자체안전교육 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액법 제31조의2 제1항, 제3항 고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자체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액법제31조의2제2항 고법제23조의2제2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0 100	200 200	300 300
20. 사고의 통보 사업자 또는 사용신고자가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받은 공사가 이를 행 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액법제35조의2제1항 고법제26조의2제1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0 50	100 100	200 2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분내용(만원)			처분내용(만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21 신고한사항중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고법 제4조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00	200	300
22 안전성평가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 경을 명한 경우 이를 위 반한 때	고법제13조의2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00	200	300
	도법제27조의2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50	300	500
23. 검사 등 고압가스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규정을 위반하 거나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실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하는 경우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고법 제16조 제3항	신설	신설	신설	100	200	300
	도법 제42조제1항	신설	신설	신설	150	300	500
2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법에 의한 공사가 아 닌 자가 한국가스안전공 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때	고법 제28조의2	신설	신설	신설	100	200	300
25. 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 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공사를 한 때	도법 제11조제2항	신설	신설	신설	150	300	500